

□ 國公立大學圖書館協議會 褒賞 規程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국공립대학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현격한 공로가 있거나 국공립대학도서관에 장기근속한 자에게 치사와 격려의 뜻으로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대상과 자격) 대상과 자격을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

- ① 공로상 : 본 협의회의 회원도서관에 20년 이상 사서직으로 근무하고 명예퇴직하거나 정년 퇴직하는 자, 또는 본 협의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
- ② 감사패 : 본 협의회 또는 회원 도서관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

제3조 (제출서류)

- ① 이력서 1통(제2조 1항에 해당자)
- ② 공적조서 1통(제2조 1항에 해당자)
- ③ 경력증명서 1통 (제2조 1항에 해당자)

제4조 (심사) 본 협의회 이사회에서 심사 의결한다

제5조 (시상)

- ① 시기 : 총회 또는 세미나 등의 본 협의회 행사 시
- ② 상 : (1) 제2조 1항(공로상) : 공로패와 금지환 순금 3돈
(2) 제2조 2항 (감사패 등) : 감사패 또는 공로패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제정 이전에 포상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